



제 883 호

2009년 9월 11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차 례

규 칙

○규칙 제2009 - 73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공 고

○공고 제2009 -1312호 고잔동 중로 1-303호선 보상계획 열람공고 6
 ○공고 제2009 -131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1
 ○공고 제2009 -1319호 200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18
 ○공고 제2009 -1326호 외국인토지취득 미신고자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23
 ○공고 제2009 -133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 27
 ○공고 제2009 -1331호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34
 ○공고 제2009 -1333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9
 ○공고 제2009 -1335호 2009. 6월 주정차위반과태료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41
 ○공고 제2009 -134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42
 ○공고 제2009 -1341호 여객자동차(택시)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 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44
 ○공고 제2009 -1343호 문화재 방법용 CCTV 설치 사실안내 및 전문가·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공고 46
 ○공고 제2009 -1347호 옥외광고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48

고 시

○고시 제2009 - 47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논현동 중3-219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50

남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

○공고 제2009-116호 공인신조공고 53

회 람								
--------	--	--	--	--	--	--	--	--

규 칙

남동구 규칙 제73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1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산관리업무 주관국장(이하 “총괄재산

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1. 구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2. 소·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동장(다만, 지도·감독은 구 본청의 업무주관 부서장이 한다)
3. 구 본청 및 소·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5.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업무주관 부서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 이외의 재산과 일반재산 및 구유재산관리 총괄사무 : 재산관리업무 주관부서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남동구”를 “구”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12조 중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5조 제목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을 “행정재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을 각각 “행정재산”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잡종재산” 을 “일반재산” 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 이라 한다)” 을 “법 제46조”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를 “조례” 로 한다.

제27조 중 “잡종재산” 을 “일반재산” 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의1부터 제10호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호 제목 중 “행정、보존재산” 을 “행정재산” 으로 한다.

별지 제17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대부(사용허가) 및 매수신청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 부
()매 수]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 화 번 호	

⑤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			신청면적 (㎡)	용 도	사용인 · 대부자 또는 매수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31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매수] 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제、개、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폐지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 규칙」을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 정비 (제2조 등)
-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 정비 (제2조 등)
- 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삭제 (제28조)
- 별지 서식 삭제 및 개정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 -1312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1. 사 업 명 : 인천시도시계획시설도로(도로:고잔동 중로 1-303호선)
2. 사업 시행자 : (주)한화 대표이사 남영선,
(주)화인파트너스 대표이사 전돈희
3. 보상담당기관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경인보상사무소
4.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457-6번지 일원
5. 사업의 기간 : 2009. 02. ~ 2009. 12. 31.
6. 사업인정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고잔동 중로 1-303호선) 실시
계획인가 고시(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9-8호, 2009. 02. 27.)
7. 보상계획의 내용 : 붙임의 토지조서
8. 보상계획의 내용 열람 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2009. 9. 8. ~ 2009. 9. 21.
나. 장소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경인보상사무소(경기 부천시원미
구 상동 446 산업은행빌딩 5층, ☎032-525-2049)
9. 보 상 시 기 : 2009년 11월 초순 예정
10.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을 보
상가격으로 결정하여 개별 협의하되, 같은법 제68조제2항의 규
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
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을 보상가격
으로 결정·협의합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같은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

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또는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경인보상사무소)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양식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날인	전화번호

다. 참고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8호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본 사업의 감정평가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통지(9월)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10월예정) → 손실보상협의(11월예정) → 협의불성립시 수용재결 → 보상금 공탁

11. 기타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상담당기관인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경인보상사무소(☎032-525-2049)으로, 시공에 관한 사항은 한화건설(☎032-446-493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내드린 토지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누락된 지장물이 있는 경우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위 열람기간이내에 이의서를 제출하여주시고, 이상이 없을 경우 보상대상 목록을 확정을 위하여 귀하의 서명·날인 후 우편으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회송 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2009년 9월 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토 지 조 서

사업명:소래논원도시개발사업기반시설공사(중로1-303호진)
 사업시행자:(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면적(㎡))		지분	소유자			성명	관계인		권리의 종류	비고
		분할전	분할 후 편 입		분할전	분할 후 편 입		주소	주소	주소					
1	인천시 남동구고잔동	457-3	457-8	전	291.0 0	7.00		오재인	인천 남동구 고잔동 458						
2	인천시 남동구고잔동	457-4	457-9	전	48.00	23.0 0		오재인	인천 남동구 고잔동 458						
3	인천시 남동구고잔동	460-13	460-23	전	105.0 0	1.00		오정진	인천 남동구 고잔동 341-3						
4	인천시 남동구고잔동	489-9	489-10	대	67.00	2.00		주식회사에스엠아로마	인천남동구고잔동489-4 (대전유성구구성동400한국과학기술원동문창업관2106호)	신용보증기금	서울마포구공덕동254-5(영등포지점)	가압류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중구중앙동47-7(인천지점)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마포구염리동68-9(인천남동지사)	압류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송파구신천동7-16(인천지사)	압류			
										인천광역시	인천남동구구월동138	압류			
										국(세대전세무서)	대전서구둔산동296	압류			
5	인천시 남동구고잔동	490-1	490-12	전	1,080.00	1.00		정정배	인천남구관교동13-6 삼환아파트 103동 505호	(채국씨티은행)	서울 중구 다동 38(송림동지점)	근저당권			
7	인천시 남동구고잔동	523-3	523-14	대	568.00	1.00		해주오씨인천시고잔동종친회(회장오원제)	인천 남동구 고잔동 470-2 (인천남동구고잔동523)						
8	인천시 남동구고잔동	523-4	523-15	임야	53.00	1.00		해주오씨인천시고잔동종친회(회장오원제)	인천남동구고잔동470-2 (인천남동구고잔동523)						

9	인천시 남동구고잔동	457-5	전		15.00	3/13	강기분	인천 남동구 민수동 1044 뉴서울(아) 106-710			
9-1	인천시 남동구고잔동	457-5	전		15.00	2/13	오추자	인천 남구 주안동 738-3			
9-2	인천시 남동구고잔동	457-5	전		15.00	2/13	오영자	캐나다국 브리티시컬럼비 아주 노스밴쿠버트릴리움 플레이스 2770			
9-3	인천시 남동구고잔동	457-5	전		15.00	2/13	오봉석	인천 남동구 고잔동 458			
9-4	인천시 남동구고잔동	457-5	전		15.00	2/13	오화석	인천 남동구 간석동 938-1 어울림마을(아) 102-602			
9-5	인천시 남동구고잔동	457-5	전		15.00	2/13	오화순	인천 남동구 민수동 1042 광명(아) 101-610			
10	인천시 남동 구 고잔동	457-3	전	313.00	14.00	3/13	강기분	인천 남동구 민수동 1044 뉴서울(아) 106-710			
10-1	인천시 남동 구 고잔동	457-3	전	313.00	14.00	2/13	오추자	인천 남구 주안동 738-3			
10-2	인천시 남동 구 고잔동	457-3	전	313.00	14.00	2/13	오영자	캐나다국 브리티시컬럼비 아주 노스밴쿠버트릴리움 플레이스 2770			
10-3	인천시 남동 구 고잔동	457-3	전	313.00	14.00	2/13	오봉석	인천 남동구 고잔동 458			
10-4	인천시 남동 구 고잔동	457-3	전	313.00	14.00	2/13	오화석	인천 남동구 간석동 938-1 어울림마을(아) 102-602			
10-5	인천시 남동 구 고잔동	457-3	전	313.00	14.00	2/13	오화순	인천 남동구 민수동 1042 광명(아) 101-610			
11	인천시 남동 구 고잔동	457-3	전	313.00	8.00	3/13	강기분	인천 남동구 민수동 1044 뉴서울(아) 106-710			
11-1	인천시 남동 구 고잔동	457-3	전	313.00	8.00	2/13	오추자	인천 남구 주안동 738-3			

11-2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457-3	457-7	전	313.00	8.00	2/13	오영자	캐나다국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노스밴쿠버트릴리움 플레이스 2770				
11-3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457-3	457-7	전	313.00	8.00	2/13	오봉석	인천 남동구 고잔동 458				
11-4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457-3	457-7	전	313.00	8.00	2/13	오화석	인천 남동구 간석동 938-1 어울림마을(아) 102-602				
11-5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457-3	457-7	전	313.00	8.00	2/13	오화순	인천 남동구 민수동 1042 광명(아) 101-610				
12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490-5		전	1.00			정정배	인천남구관교동13-7 쌍용아파트6동 502호				
13	인천시 남동구고잔동	489-5		대	47.00			조수영	인천 남구 고잔동 322	국(창원세무서)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4-3	압류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31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9. 7.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대상 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전공고 (안 제4조)
- 우선계약 (안 제6조)
- 사업자 의무 (안 제7조)
- 계약해지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9년 9월 28일까지 읍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주민생활지원과)에게 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453 - 2521)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대상 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전공고 (안 제4조)
- 우선계약 (안 제6조)
- 사업자 의무 (안 제7조)
- 계약해지 (안 제8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제42조
- 「노인복지법」 제2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우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말한다.
2. “공공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 라 한다) 본청, 보건소, 출장소 및 동 주민센터의 청사
 - 나.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 다. 구 투자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3. “매점” 이라 함은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복권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바닥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다른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전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투자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구보, 일간신문 또는 구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
2. 장애인등록증 사본,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 대리신청 할 경우에 한함)

제6조(우선계약)

- ①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장애인 등이 두 명 이상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계약만료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

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계약해지)

①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은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사망·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 별표 】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 (제6조 관련)				
순위	장 애 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1	장애등급이 1, 2급 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 급자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5조에 의한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2	장애등급이 3, 4급 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 급자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5조에 의한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를 제외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 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3	장애등급이 5, 6급 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 급자			

※ 단, 동일 순위자중 2가지 이상 조건 해당자가 동일 순위에서 우선
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 - 1319호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9. 7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09.1.1~6.30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등 토지의 이동이 발생한 개별필지에 대하여 조사 산정하여 200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열람기간 : 2009. 9. 7 ~ 9. 28
- 열람대상 : ‘09. 1. 1 ~ 6. 30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 열람방법
 - ☞ 남동구청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 개별공시지가 열람

○ 의견제출

- 기 간 : 2009. 9. 7 ~ 9. 28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제출방법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및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032)453-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요령 : ⑤ 난의 일련번호는 지가열람부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⑨ 의견제출사유는 대상토지의 지형지세 및 주변여건 등 의견가격을 제시하게 된 사유를 기재한다.
- ※ 동일인이 여러필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대상토지와 의견제출항목에 대하여 별지로 기재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09. 1. 1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각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 - 13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외국인토지법 제4조 및 제5조』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토지취득 미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9년 9월 9일 ~ 2009년 9월 24일
2. 공고내용 : 붙임
3. 위 공고 기간까지 남동구청 민원지적과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민원지적과(☎032-453-2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9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고문 붙임내역

대상자	성명	안정훈	주민등록번호	621215-5*****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공원길 11 이지빌라 나-301(청담동 69-10)		
목적부동산표시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5-11		
	지목	대	면적(㎡)	129.1
위반사항	근거법규	외국인토지법 제5조		
	위반내용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미신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납부 독촉	과태료 : 600,000원		

대상자	성명	구경숙	주민등록번호	680220-6*****
	주소	5 밀버튼 드라이브 이토비콕 온타리오 캐나다		
목적부동산표시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364-2, 459-36		
	지목	답	면적(㎡)	364-2 : 1015㎡ 459-36 : 6271㎡
위반사항	근거법규	외국인토지법 제5조		
	위반내용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미신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납부 독촉	과태료 : 600,000원		

대상자	성명	이피트라스복선	주민등록번호	520703-6*****
	주소	독일연방공화국 쾰른시 임 로호가르텐 21		
목적부동산표시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123 태정빌라 101호		
	지목	대	면적(㎡)	15.9
위반사항	근거법규	외국인토지법 제4조		
	위반내용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미신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납부 독촉	과태료 : 1,800,000원		

대상자	성명	이혜은	주민등록번호	590326-6*****
	주소	미합중국 워싱턴주 98012 바텔시 사우스이스트 스트리트 185가 3710호		
목적부동산표시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4 롯데캐슬골드 2406 동 3103호		
	지목	대	면적(㎡)	32.1748
위반사항	근거법규	외국인토지법 제4조		
	위반내용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미신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납부 독촉	과태료 : 1,200,000원		

대상자	성명	정 은 나	주민등록번호	590719-6*****
	주소	1310 해울루 길 101, 호놀룰루 하와이 96822		
목적부동산표시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14 벽산아파트 111동 1603호		
	지목	대	면적(㎡)	28.523
위반사항	근거법규	외국인토지법 제4조		
	위반내용	계약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미신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납부 독촉	과태료 : 1,500,000원		

대상자	성명	지 경 란	주민등록번호	611207-6*****
	주소	미합중국 뉴욕주 11235 브룩클린 포드 스트리트 2628번지		
목적부동산표시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43 주공아파트 1002동 1307호		
	지목	대	면적(㎡)	34.14
위반사항	근거법규	외국인토지법 제5조		
	위반내용	계약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미신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납부 독촉	과태료 : 600,000원		

대상자	성명	황 승 주	주민등록번호	611207-6*****
	주소	캐나다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 폴즈 레이크우드 크레스 7364		
목적부동산표시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81-12 삼보다세대주택 다동 401호		
	지목	대	면적(㎡)	26.924
위반사항	근거법규	외국인토지법 제4조		
	위반내용	계약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미신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납부 독촉	과태료 : 1,500,000원		

대상자	성명	살백영인	주민등록번호	470520-6*****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1-35		
목적부동산표시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3-5 효성아파트 303호		
	지목	대	면적(㎡)	11.076
위반사항	근거법규	외국인토지법 제4조		
	위반내용	계약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미신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납부 독촉	과태료 : 1,800,000원		

대상자	성명	성 의 순	주민등록번호	460301-6*****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법원7로 93 신동아아파트 32-306 (학익동)		
목적부동산표시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38-1어울림마을 103동 801호		
	지목	대	면적(㎡)	30,128
위반사항	근거법규	외국인토지법 제4조		
	위반내용	계약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미신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납부 독촉	과태료 : 1,500,000원		

대상자	성명	박명순	주민등록번호	470207-6*****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97 AID아파트 9동 214호		
목적부동산표시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17-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18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24-1		
	지목	임	면적(㎡)	12,694(지분:4/306) 35,008(지분:4/306) 39,570(지분:4/306)
위반사항	근거법규	외국인토지법 제5조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신고)		
	위반내용	토지취득신고 해태 (토지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납부 독촉	과태료 : 500,000원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 - 133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9. 9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규칙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2. 제정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2009. 7. 1. 시행 2009. 11. 1. 기획재정 부령 제90호)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적 특성에 맞게 규칙으로 규정 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의 여건에 맞게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으로 규정함 (안 제1조)

나.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규정함 (안 제4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 기준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 50미터 이상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 기준
 - 지정대상 및 소매인 수, 영업소간 거리 등
- 담배소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기준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건물 및 매장면적의 측정 방법 등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참조:지역경제과,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53-2673, FAX 453-26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9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2009. 7. 1. 시행 2009. 11. 1. 기획재정부령 제90호)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적 특성에 맞게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 우리구의 여건에 맞게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으로 규정함 (안 제1조)
-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규정함 (안 제4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 50미터 이상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
· 지정대상 및 소매인 수, 영업소간 거리 등
 - 담배소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기준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건물 및 매장면적의 측정 방법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담배소매업”이라 함은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담배소매인”이라 함은 담배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다.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대상

- 가.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 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 다.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 라.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마.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지정소매인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의해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의한 소매인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3.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과 제2항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4. 소매인 지정시 부적합한 장소는 제1항제2호와 같다.

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 유원지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써 담배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물의 측정방법

제2항제1호라목의 연면적과 층수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3. 매장면적의 측정방법

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거나 바닥면적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으로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가.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한다.

나.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

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 - 13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양인모 외 132건
(붙임 “공고내역” 명단 참조)
- 공 고 기 간 : 2009. 9. 9. ~ 2009. 9. 24.
- 공 고 내 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 미거주·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무보험 미가입자께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시어 보험가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3. 의무(책임)보험 계약을 이미 체결하셨거나 붙임내역과 상이한 경우 증명서류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손해보험팀(☎032- 453-2925, 2926 FAX : 032-453-291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공고기한 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예고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9월 9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 및 부과예고 반송명단(2009년7월3차)

연번	접수번호	과태료	차량번호	납부자명	주 소	사 유	비 고
1	00019372	5000	01노9884	양인모	인천 남동만수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2	00019382	5000	02두2103	허장운	인천 남동간석동	수취인불명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3	00019386	5000	02마9318	권영조	인천 남동만수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4	00019389	5000	02자6001	심정식	인천 남동간석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5	00019391	19000	03가9346	장승화	인천 남동만수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6	00019395	5000	03우3765	최종숙	인천 남동구월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7	00019401	5000	04라6008	고춘란	인천 남동간석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8	00019405	5000	05마1332	지형훈	인천 남동만수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9	00019411	5000	06보1747	박인규	인천 남동간석동	경비원수령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10	00019415	35000	06부2992	김용문	인천 남동구월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11	00019417	5000	06사6310	고순택	인천 남동간석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12	00019419	5000	06사6350	강은혜	인천 남동남촌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13	00019423	17000	06주7518	송향안	인천 남동만수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14	00019427	19000	07구8599	이장희	인천 남동만수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15	00019429	5000	07너1040	이상호	인천 남동간석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16	00019439	5000	08가1309	김형성	인천 남동구월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17	00019442	5000	08누6117	장 근	인천 남동남촌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18	00019444	5000	08마6174	방진호	인천 남동구월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19	00019446	5000	08무8630	최강우	인천 남동만수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20	00019450	5000	08보9425	박철진	인천 남동구월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21	00019456	5000	09타2766	복정열	인천 남동만수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22	00019462	7000	10두9559	조예성	인천 남동간석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23	00019464	5000	10바7264	송무부외 인(이화수)	인천 남동간석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24	00019470	5000	12라5921	고자율	인천 남동구월동	수취인불명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25	00019474	5000	13고6837	박주호	시흥시 대야동	경비원수령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26	00019480	5000	15두2673	최장섭	인천 남동만수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27	00019482	5000	16마7040	염나무	인천 남동논현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28	00019484	5000	16마7109	차경화	인천 남동간석동	경비원수령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29	00019490	5000	17우9825	김선자	인천 남동구월동	이사불명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30	00019494	5000	22타2471	김상영	인천 남동간석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31	00019496	5000	22타2908	오원희	인천 남동만수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32	00019508	5000	24마4228	김상원	인천 남동구월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33	00019510	5000	25가4438	이철희	인천 남동구월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34	00019526	5000	25조2928	황주만외 인(황진호)	인천 남동만수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35	00019528	5000	25조9729	조현호	인천 남동논현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36	00019544	5000	26너7910	김태환	인천 남동논현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37	00019553	7000	28도2751	최미화	인천 남동구월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38	00019557	5000	28라8254	김문학	인천 남동구월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39	00019563	5000	28바5486	정영창	인천 남동간석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40	00019567	5000	30다2444	박인규	인천 남동간석동	경비원수령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41	00019569	35000	30다6475	김규철	인천 남동만수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42	00019608	5000	30서1478	김용식	인천 남동간석동	수취인불명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43	00019640	5000	30서1665	서병인	인천 남동구월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44	00019666	5000	31수2996	주성진	인천 남동간석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45	00019680	13000	34가6950	민도운	인천 남동논현동	경비원수령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46	00019682	5000	34타4703	백경원	인천 남동논현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47	00019716	15000	36소2369	김미선	인천 남동논현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48	00019726	5000	37누7380	김형배	인천 남동구월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49	00019728	5000	37라7903	정용훈	인천 남동간석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50	00019730	5000	37라7921	박혜은	인천 남동간석동	경비원수령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51	00019736	5000	38내1122	정완숙	인천 남동논현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52	00019740	5000	39누8083	박준오	인천 남동간석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53	00019748	5000	40부7399	김형찬	인천 남동구월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54	00019750	5000	41가2628	진행준	인천 남동간석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55	00019754	5000	43가6439	김경성	인천 남동논현동	경비원수령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56	00019756	5000	46내1122	성주영	인천 남동논현동	경비원수령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57	00019778	5000	50부6287	하정구와1 (하현준)	인천 남동만수동	경비원수령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58	00019788	5000	52무1903	한병옥	인천 남동논현동	경비원수령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59	00019844	5000	64주8683	조생명	인천 남동구월동	기타수령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60	00019850	25000	68타5238	(주)다행건설	인천 남동만수동	수취인불명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61	00019852	5000	68두4018	이민수	경기도시흥시정왕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62	00019870	5000	73구7233	최돈금	인천 남동만수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63	00019874	5000	73노1719	이기찬	인천 남동구월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64	00019876	5000	73두6098	임순빈	인천 남동남촌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65	00019878	5000	73두7838	장현호	인천 남동만수동	경비원수령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66	00019880	5000	73두7842	장현호	인천 남동만수동	경비원수령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67	00019890	5000	73보4229	한민우	인천 남동간석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68	00019894	5000	73오2619	신영미	인천 남동서창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69	00019960	5000	86라2634	연병선	인천 남동간석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70	00019972	5000	86보5237	정연석	인천 남동만수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71	00019980	5000	86부7057	송윤철	인천 남동만수동	경비원수령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72	00019982	5000	86서3064	거산기술정보통신(주)	인천 남동만수동	수취인불명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73	00019986	5000	86소2671	윤재원	인천 남동구월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74	00019994	5000	86소9169	권대식	인천 남동간석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75	00020022	21000	87가5658	(주)산하엔지니어링	인천 남동고잔동	이사불명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76	00020033	5000	91가2703	유화자	인천 남동간석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77	00020043	9000	94바5202	김경범	인천 남동논현동	경비원수령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78	00020071	11000	인천30다3056	송기석	인천 남동만수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79	00020085	5000	인천30로7952	홍명진	인천 남동구월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80	00020098	5000	인천31고9821	안병찬	인천 남동만수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81	00020104	17000	인천31도1937	김병운	인천 남동간석동	수취인불명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82	00020108	7000	인천31두2365	박항진	인천 남동만수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83	00020110	5000	인천31두5260	신경훈	인천 남동간석동	경비원수령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84	00020112	5000	인천31루6819	고려이엔지(주)	인천 남동고잔동	이사불명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85	00020114	5000	인천31루8424	이승규	인천 남동구월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86	00020128	5000	인천32너6511	김희정	수원 장안 정자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87	00020134	9000	인천32라2050	남성호	인천 남동간석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88	00020142	5000	인천32라8978	김종부	인천 남동남촌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89	00020146	5000	인천32라4841	서기섭	인천 남동만수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90	00020152	81000	인천33가6971	엄부용	인천 남동간석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91	00020154	5000	인천33구7385	이재성	인천 남동구월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92	00020164	5000	인천33모8524	정은섭	인천 남동논현동	관리사무소수령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93	00020178	5000	인천35라7993	신제순와인(신동권)	인천 남동만수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94	00020190	5000	인천70너4642	김용태	인천 남동만수동	이사불명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95	00020192	231000	인천70라2959	김충관	인천사남구용현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96	00020210	5000	인천7로3313	양승원	인천 남동구월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97	00020214	5000	인천80고6756	서경환	인천 남동간석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98	00020220	5000	인천80더5531	김태환	인천 남동논현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99	00020226	9000	인천80라2421	김명수	인천 남동만수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100	00020234	5000	인천81디6273	한명주	인천 남동서창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101	00020238	5000	인천81라5006	윤용갑	인천 남동만수동	이사불명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102	00020242	5000	인천81라5278	(주)대웅건영	인천 남동구월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103	00020248	5000	인천82가5652	최용남	인천 남동만수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104	00020279	5000	인천86비3911	김승식	인천 남동논현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105	00020285	5000	인천86비8232	김승식	인천 남동논현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106	00020292	3000	인천남동차1880	하관옥	인천 남동만수동	경비원수령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107	00020310	4800	인천남동차4410	하성옥	인천 남동만수동	경비원수령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108	00020316	5400	인천남동차4877	박현수	인천 남동간석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109	00020323	5000	02서8510	홍영득	인천 남동만수동	폐문부재	09.8.24 부과예고서 반송분
110	00013663	-	45가 8841	김현순와인(이병철)	인천 남동 장수동	반송합투입	09.6.19 가입촉구서 반송분
111	00015006	-	89우 4997	백성배	인천 남동 만수동	반송합투입	09.6.30 가입촉구서 반송분
112	00016425	-	02더8901	조필상	인천 남동 간석동	반송합투입	09.7.22 가입촉구서 반송분
113	00018260	-	인천30너4521	빛나라종합건설(주)	인천 남동 만수동	반송합투입	09.8.01 가입촉구서 반송분
114	00019085	-	86아3517	(주)삼원종합건설링	인천 남동 간석동	반송합투입	09.8.12 가입촉구서 반송분
115	00019067	-	86소5600	(주)삼원종합건설링	인천 남동 간석동	반송합투입	09.8.12 가입촉구서 반송분
116	00019089	-	86아3545	(주)삼원종합건설링	인천 남동 간석동	반송합투입	09.8.12 가입촉구서 반송분
117	00019087	-	86아3542	(주)삼원종합건설링	인천 남동 간석동	반송합투입	09.8.12 가입촉구서 반송분
118	00019091	-	86아3546	(주)삼원종합건설링	인천 남동 간석동	반송합투입	09.8.12 가입촉구서 반송분
119	00019367	-	95가5666	(주)삼원종합건설링	인천 남동 간석동	반송합투입	09.8.12 가입촉구서 반송분
120	00019045	-	86매5555	(주)삼원종합건설링	인천 남동 간석동	반송합투입	09.8.12 가입촉구서 반송분
121	00019130	-	95구6648	한도기	인천 남동 만수동	이사감	09.8.12 가입촉구서 반송분

122	00019840	-	62가7755	(유한)대송 부동산정보	인천 남동 간석동	주소불명	09.8.12 가입촉구서 반송분
123	00019676	-	33누7235	한독환경건 설주	인천 남동 만수동	이사감	09.8.21 가입촉구서 반송분
124	00020218	-	인천80년2139	원지금속(주)	인천 남동 고잔동	이사감	09.8.21 가입촉구서 반송분
125	00019798	-	52하6510	태양렌트카 (주)	인천 남동 구월동	이사감	09.8.21 가입촉구서 반송분
126	00019800	-	54라6652	(주)씨에이텍	인천 남동 논현동	이사감	09.8.21 가입촉구서 반송분
127	00019516	-	25다2722	(주)원마	인천 남동 고잔동	이사감	09.8.21 가입촉구서 반송분
128	00019555	-	28라7788	여알엔지니 어링주	인천 남동 고잔동	이사감	09.8.21 가입촉구서 반송분
129	00019864	-	73구3782	한독환경건 설주	인천 남동 만수동	이사감	09.8.21 가입촉구서 반송분
130	00020079	-	인천90도6173	최미란	인천 남동 구월동	이사감	09.8.21 가입촉구서 반송분
131	00020256	-	인천83다2332	강신구	인천 남동 간석동	이사감	09.8.21 가입촉구서 반송분
132	00019892	-	73부8523	차영복	인천 남동 간석동	반송합투입	09.8.21 가입촉구서 반송분
133	00020148	-	인천32라5115	심은연	인천 남동 만수동	반송합투입	09.8.21 가입촉구서 반송분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333호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 규정을 위반한 아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6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9년 9 월 9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2. 공고기간 : 2009. 9. 09 ~ 2009. 9. 23(15일간)
3. 청문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일반음식점 영업소 폐쇄				
2. 당사자	성명(명칭)	양호진(렉스라이브, 영업신고번호 : 구월1-1093)				
	주 소	영업소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58 우창빌딩 201,202,203 주민등록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16-7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소 폐쇄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식품위생법 제21조, 동법 제22조 제5항(영업의 허가등) 위반 식품위생법 제58조(허가의 취소등) 적용				
6. 청 문 실 시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당부서명	위 생 과	담당자	박혜련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 (만수동 1008) 남동구청 위생과(6층)			전화번호	(032)453-2622
	일 시	2009년 10월 8일(목) 11:00				
	장 소	남동구청 위생과(6층)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남동구청 공중위생담당		
	성 명		장 춘 일			

4.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4)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식품위생팀 032-453-262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 - 1335호

▶2009년 6월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 06월중 주정차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2009년 08월에 과태료 납부고지서(정기분)를 지방세법 제51조의 2규정에 의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수취인미거주, 이사, 기타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공고에 의한 납입의 고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09. 1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제 목 : 2009년 6월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공고에 의한 납입의 고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 인천 남동구 구월동 24번지 송우창 등 2,568명(붙임참조)

4. 공시송달 공고 기간 : 2009.09.14 ~ 09.28 (15일간)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032-453-2890) 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2009.09.3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가산된 독촉분 고지서가 발송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 붙임 참조

7.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 게재생략(관계부서 비치 및 구홈페이지참조)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 - 1340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분명 및 수취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송달대상자 : 배차곤

성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사전내용	비고
배차곤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06-1 13/4 뉴동진빌라 403호	상호미표시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만원	인천82바3299

2. 공시송달기간 : 2009.09.10 ~ 2009.09.24 (15일간)

3. 내 용 :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4. 참고사항

: 처분사전 통지서 수령대상자는 2009.09.23일까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 453-2914)로 오셔서 처분사전 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453-2914, FAX 453-29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위 반 사 항				업체명 운전자	운전자 주민번호	행정 처분	관련법근거	검토 내용
		일시	장소	차량번호	신고내용					
4	01.06	01.06 (08:55)	구월동사무소~민월중학교	인천80바 9495	승차거부 (불친절)	전상혁	560821- *****	경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26조제4항	전화접수전
7	01.16	01.14 (17:35)	공촌삼거리	인천80바 4883	승차거부	박진섭	550604- *****	경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26조제4항	시청교통관리과 -879 (09.01.16)
90	05.07	04.21 (15:00)	인천구치소~ 구월동다이아나아파트	인천80바 5504	부당요금징수 (불친절)	김명훈	511214- *****	주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26조제4항	전화접수전
136	06.29	06.28 14:10	연수구 청학동 상용@부근	인천80바 8135	카드결제 거부	김경화	500312- *****	주의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제26조제 항	시시민봉사회 -4200(09.06.29) 민원지참과 -13201(09.06.29)
146	07.06	07.01 04:52	부천오정구여월동주주회집- 오정구작동해운리리안	인천80바 5385	영업구역 외 영업	인철훈	561002- *****	과징금 20만원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제26조제 항	부천시교통관리과 -16476(09.07.06)
165	6.22	6.19 00:49	영등포구신세계 백화점마포점	인천80바 3908	운전자지정 복장위반	이상준	620108- *****	과태료 5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4항	관악구교통지도과 -14800
169	7.02	6.25 11:08-11: 24	상동세이브존 앞	인천80바 4827	장기정차 여객유지	김용민	580621- *****	과태료 10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4항	부천시교통관리과 -16114(2009.07.02)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3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전상혁외 6건
(붙임 “공고내역” 명단 참조)
- 공 고 기 간 : 2009. 09. 11. ~ 2009. 09. 25.(15일간)
- 공 고 내 용 : 여객자동차(택시)운수사업법위반(교통불편, 법규위반)
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서·고지서 수취 불능분 공시
송달

1. 여객자동차(택시)운수사업법위반(교통불편,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서·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 미거주·이사감 등의 사유로 미수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고지서 수령대상자께서는 공고내역 납부기일(공고내역 참조)까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453-2912)로 오셔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 은행, 농협 또는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09월 1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 - 1343호

방범용CCTV설치 사실안내 및 전문가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문화재 방범 · 방재용 CCTV 설치하고자 하오니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1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설치개요

- 사 업 명 : 논현포대 CCTV 설치공사
- 필 요 성 : 문화재 도난 및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재용 CCTV 설치
- 설치장소 : 논현포대(남동구 논현동 415-56 소재) 내 3개소
- 의견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

(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기준)

- 제출기한 : 2009. 9. 24
- 제 출 처 : 남동구청 문화홍보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소래길 88) Fax 032-453-2139

■ 유의사항

- 공고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의견제출은 본인 성명,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내용은 별도의 서식없이 자유롭게 작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문화홍보실

(문화예술팀 ☎032-453-213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 - 1347호

옥외광고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에 옥외광고업소로 등록 신고한 주소지 내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 변경등록’ 또는 ‘옥외광고업 폐업’ 처분 하고자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서 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2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2009. 9. 22. 한 우리 구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등록사항 직권말소됨을 공시송달 합니다.

1. 대상 업소

연 번	업소명	성 명	영업장 주소지
1	모던기획	김종환	남동구 구월동 1159번지 신정빌딩 3층
2	광고세상천일	김광진	남동구 구월동 1221-9번지
3	구월현수막	최상석	남동구 구월동 1289번지 4호 장록빌딩302
4	(주)진한테크	(주)진한 강영진	간석동 173번지 6호 진주빌딩 3층
5	씨앤지기획	구영이	간석동 434번지 12호
6	지앤에프테크비전(주)	유선영	간석동 553번지 3호 302호
7	3D	이대준	간석동 607번지 9호
8	세진광고	김경호	간석동 612번지 신양베스트빌상가 1동 102호
9	삼도광고	최은근	간석동 94번지 1호
10	유진종합광고	김정철	만수동 904번지 14호 102호
11	칼라에드	노재일	남동구 운연동 414-1

2.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축과 도시경관팀 (☎453-2832)

2009. 9. 1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9 - 47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논현동 중3-219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 논현동 중3-219호선, 사업명: 논현동 중3-219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고 고시 합니다.

관계до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032-453-2725) 및 도시개발과(☎032-453-299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9. 09. 1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시행지 :

- 중 3-219호선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30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로(중로 3-219호선)
- (2) 명 칭 : 논현동 중3-219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중로 3-219호선 : L=335m중 폭원(B)=12m, 연장(L)=100m(택지개발지구 제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88(만수6동 1008번지)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0. 0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

7.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8. 첨 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용 지 조 서

공 사 명 : 논현동 중3-219호선 도로개설공사

부 호	소 재 지			지목	편입 내 역			소 유 자		내 역	관 계		비 고
	동 명	지 번	지 면		지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1	논현동	111-6		도	2,866.0	48.0	2,818.0			인천광역시			
2	논현동	111-15		도	73.0	67.0	6.0			국(국토해양부)			
3	논현동	111-16		도	29.0	29.0	-			국(국토해양부)			
4	논현동	111-275		대	28.0	28.0	-	인천 계양구 작전동 615-4 크리 스탈타운 2동 302호	이영세				
5	논현동	111-376		도	138.0	42.0	96.0			국(국토해양부)			
6	논현동	111-308		대	539.0	539.0	-	인천 계양구 작전동 615-4 크리 스탈타운 2동 302호 서울양천구목동901목동신시가지 아파트102-108	이영세 정준환				
					3,673.0	753.0	2,920.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09-11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직인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9. 7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 신조 사유: 공단 업무 필요에 따른 추가직인 신조
- 최초 사용년월일:2009.9.10
- 신조 직인명 및 인영

직인종류	신조 직인명	서체및 규격(Cm)	인영	사용부서
기타직인	인천광역시남동구도 시관리공단분임물품 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 X 1.8)		인천광역시남동구도 시관리공단 경영관리팀
기타직인	인천광역시남동구도 시관리공단 이사장인(계인)	한글전서체 (2.7 X 1.3)		인천광역시남동구 도시관리공단 경영관리팀